

『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2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3월 10일

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- 2017년 5월 구미시산림문화관 개관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산동참생태숲, 자생식물단지, 산림복합체험단지 등 주변시설을 통합하는 「구미에코랜드」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체험, 학습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에코랜드 목적, 적용범위 및 정의(안 제1조 ~ 제3조)
- 개관 및 휴관일, 시설의 이용시간(안 제4조, 제5조)
- 입장료, 시설이용료, 이용료 등 감면(안 제6조 ~ 제8조)
- 시설의 예약 및 시설이용료 반환(안 제9조, 제10조)
- 시설사용의 제한(안 제11조)
- 위탁운영(안 제15조)
- 사업지원 등(안 제16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건 호

○ 본 「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2017년 5월 구미시산림문화관 개관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산동참생태숲, 자생식물단지, 산림복합체험단지 등 주변시설을 통합하는 「구미에코랜드」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체험, 학습 및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